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3월 3일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5호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안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평창 치유의 숲 관리·운영
6. 평창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7.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회공헌활동 등) ① 공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 범위, 절차 및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조직 및 정원) 공단의 기구, 조직 및 정원에 대한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 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정관 제5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p>1. <u>수학아카데미 관리·운영</u></p> <p><u>&lt;신 설&gt;</u></p> <p>2. ~ 5.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6.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6조(사업) ----- ----- -----.</p> <p><u>&lt;삭 제&gt;</u></p> <p>5. <u>평창 치유의 숲 관리·운영</u></p> <p>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p> <p>6. <u>평창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u></p> <p>7. <u>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u></p> <p>8. (현행 제6호와 같음)</p> <p><u>제6조의2(사회공헌활동 등) ① 공 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 리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 의 대상, 범위, 절차 및 예산 집 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의 규정으로 정한다.</u></p>
<p><u>제13조(조직 및 정원) ① 공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u></p> <p><u>② 공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 다.</u></p>	<p><u>제13조(조직 및 정원) 공단의 기 구, 조직 및 정원에 대한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 규정」으로 정한다.</u></p>

③ 부서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기구표

<삭 제>

[별표 2] 정원표

<삭 제>

[별표 3] 부서별 정원표

<삭 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3월 3일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제43호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조직(TF)의 구성, 운영, 성과 평가 및 참여 직원 보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내규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43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구표 (제11조 관련)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정원표 (제12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및 시설관리직					시설관리직
		이사장	6급	7급	8급	9급	
<b>계</b>	<b>64</b>	<b>1</b>	<b>5</b>	<b>4</b>	<b>5</b>	<b>7</b>	<b>42</b>

※ 비상임이사 및 감사,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구) ①·② (생   략)  <u>&lt;신   설&gt;</u>	제11조(기구) ①·② (현행과 같 음)  <u>③ 제2항에 따른 임시조직(TF) 의 구성, 운영, 성과 평가 및 참 여 직원 보상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은 이사장이 따로 내규로 정 한다.</u>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3월 3일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제53호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장애인·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을 “장애인·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고졸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직무 중심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재 채용을 위하여 직무기술서를 마련하고, 채용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⑥ 이사장은 인재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졸 인재에 적합한 직무를 분석하고 채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전보제한 기간 동안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동일 업무 범위 내에서 보직순환을 실시한다.

1. 공단의 다른 규정에서 필수보직기간이 정해진 직위에 보직된 직원
2. 시설물 유지관리·안전·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으로서 이사장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안전보건 전담직원 등 공단의 다른 규정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한 직위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포상 및 자격평정”을 “포상, 자격평정 및 가점평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입사 후 취득한 직무 관련 자격증,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조직(TF) 활동 실적, 전사적 혁신과제 성과, 결혼 및 자녀 출산 등에 대하여 가점평정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가점 기준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채택시행”을 “채택시행, 핵심 혁신과제 수행 및 임시조직(TF) 활동 등”으로 한다.

제12장의 제목 “보칙”을 “직무·역량 기반 인사관리”로 한다.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각각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기본원칙) 이사장은 직무·역량 기반 인사관리를 통해 공정성·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2조(직무분석 및 직무기술서) 이사장은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관리하며, 이를 채용·배치·교육훈련·평가 등에 활용한다. 세부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63조(직무평가 및 활용) 이사장은 직무의 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는 인력운영·조직관리 및 관계규정에 따른 보상체계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6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규정 제53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4조(전보제한) ①·② (생략)

<신 설>

제29조(승진순위) ① (생략)

② 승진후보자순위의 결정은 근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전보제한 기간 동안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동일 업무 범위 내에서 보직순환을 실시한다.

1. 공단의 다른 규정에서 필수보직기간이 정해진 직위에 보직된 직원

2. 시설물 유지관리·안전·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으로서 이사장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24조(전보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안전보건 전담직원 등 공단의 다른 규정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한 직위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승진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 포상 및 자격평정 등에 의한다. 단, 자격평정은 입사 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가점평정을 한다.

③ (생략)

제37조(특별승진 및 승급) ① 이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 또는 1호봉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생략)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2장 보칙

<신설>

----- 포상, 자격평정 및 가점평정 --- 단, 입사 후 취득한 직무 관련 자격증,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조직(TF) 활동 실적, 전사적 혁신과제 성과, 결혼 및 자녀출산 등에 대하여 가점평정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가점 기준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특별승진 및 승급)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채택시행, 핵심 혁신과제 수행 및 임시조직(TF) 활동 등--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장 직무·역량 기반

인사관리

제61조(기본원칙) 이사장은 직무·역량 기반 인사관리를 통해 공

<p>&lt;신 설&gt;</p>	<p><u>정성·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u></p> <p><u>제62조(직무분석 및 직무기술서)</u>  <u>이사장은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관리하며, 이를 채용·배치·교육훈련·평가 등에 활용한다. 세부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u></p>
<p>&lt;신 설&gt;</p>	<p><u>제63조(직무평가 및 활용) 이사장은 직무의 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는 인력운영·조직관리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보상체계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u>제61조 ~ 제63조 (생략)</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3장 보칙</u></p> <p><u>제64조 ~ 제66조 (현행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와 같음)</u></p>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3월 3일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제59호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근로계약 및 「시설관리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성과급의 개인별 차등지급) ① 공단은 제15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등급체계, 등급별 배분기준, 지급률(등급별 가감), 산정방법, 지급절차, 지급대상 및 제외, 이의신청, 우대·특례 적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이사장이 연도별 운영지침 또는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급 지급 대상은 일반직 및 시설관리직으로 하며, 성과평가 대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이사장은 결혼 또는 출산한 직원에 대하여 제2항의 운영지침 또는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지급 산정 시 우대(가산 등) 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성과평가 등급의 변경은 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본문 중 “14만원”을 “16만원”으로 한다.

#### 부 칙 <규정 제59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조(정액급식비)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이사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이사장은 결혼 또는 출산한 직원에 대하여 제2항의 운영지침 또는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지급 산정 시 우대(가산 등) 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성과평가 등급의 변경은 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정액급식비) -----  
 ----- 16만원-----  
 -----.  
 -----  
 -----  
 -----  
 -----  
 -----  
 -----  
 -----  
 -----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3월 3일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제60호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관계 규정의 준용 및 인센티브 적용) ① 시설관리직 등에게 적  
용되는 채용, 복무, 휴가, 상벌, 복리후생, 포상·인센티브 등 처우에 관  
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의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취업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포상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준용 적용 시 직종 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관계 법령, 예산 및 근로계약의 범위에서 준용한다.

③ 직제규정에 따른 임시조직(태스크포스 등)에 시설관리직 등이 참여하여 성과를 창출한 경우, 제1항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포상,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재계약”을 “재계약,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시설관리직(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다)”을 “시설관리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예산”을 “예산의”로, “명절휴가비”를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로 한다.

## 부 칙 <규정 제60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제20조 관련)

항 목	지 급 금 액	비 고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만근 기준
명절휴가비	1회 400,000원	연2회(6개월 이상 계약자)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2조의2(관계 규정의 준용 및 인센티브 적용) ① 시설관리직 등에게 적용되는 채용, 복무, 휴가, 상벌, 복리후생, 포상·인센티브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의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취업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포상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u></p> <p><u>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준용 적용 시 직종 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관계 법령, 예산 및 근로계약의 범위에서 준용한다.</u></p> <p><u>③ 직제규정에 따른 임시조직(태스크포스 등)에 시설관리직 등이 참여하여 성과를 창출한 경우, 제1항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포상,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u></p>
<p>제13조(근무성적 평가) (생 략)</p>	<p>제13조(근무성적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3월 3일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1호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울러 공단이 수행·관리하는 도급·용역·위탁 및 하도급 업무를 포함하여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도급받은”을 “도급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도급 사업장”을 “도급·용역·위탁 또는 하도급 사업장(이하 “도급등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작업”을 “작업 착수”로, “실

시”를 “실시하거나, 수급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 중 “하도급”을 각각 “도급등”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관련법”을 “관련 법령”으로,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을 “중지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도급등 작업 착수 전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조치, 비상대응, 연락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 절차, 서식 및 기록관리 기준은 이사가 정하는 「도급·용역 안전보건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전보건 전담직원의 전보제한 등) ① 공단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등 안전보건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전담업무 부여(선임·지정) 후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징계, 직무수행 부적정 등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본인의 전보 희망 또는 건강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이내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보건 전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훈련 기회 제공, 자격 취득 지원 및 승진 가점 부여 등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지정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용역 등으로 다수의 수급인이 동시에 작업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부 칙 <규정 제31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6조(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공단은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신설>

② 하도급 사업장은 공단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하도급 사업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하도급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 도급·용역·위탁 또는 하도급 사업장(이하 “도급등 사업장”이라 한다)----- 작업 착수 ----- 실시 하거나, 수급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 -----.

② 공단은 도급등 작업 착수 전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조치, 비상대응, 연락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도급등 -----  
-----  
-----.

<삭제>

④ ----- 도급등 -----  
-----  
----- 관련 법령 -----  
-----

작업을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중지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  
절차, 서식 및 기록관리 기준은  
이사장이 정하는 「도급·용역  
안전보건관리지침」으로 정한  
다.

제7조의2(안전보건 전담직원의 전  
보제한 등) ① 공단은 안전관리  
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업  
무 담당자 등 안전보건 전담업  
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직  
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업  
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전담  
업무 부여(선임·지정) 후 2년 이  
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
2. 징계, 직무수행 부적정 등 인  
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본인의 전보 희망 또는 건강  
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 ③ (생략)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이내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보건 전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훈련 기회 제공, 자격 취득 지원 및 승진 가점 부여 등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

⑤ 공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용역 등으로 다수의 수급인이 동시에 작업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